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농 식 품 산 업 과

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

구 미 시

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출범 이후 지역농산물 기획생산, 로컬푸드 유통, 학교·공공급식 등 구미시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,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 운영 등 확대되는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나. 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구미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

(2) 대 표 자 : 이사장 김장호

(3) 소 재 지 : 구미시 고아읍 이례로4길 65-12(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)

(4) 출연금액 : 2,700백만원

(5) 출연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주요 사업

(1)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, 생산농가 교육 및 농가조직화 등 지역농업 기반 강화

(2)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

(3)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를 기반으로 한 학교·공공급식의 공급·물류·배송 및 식재료 품질관리

다. 출연의 필요성

(1) 재단은 2021년 출범 이후 구미시 먹거리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기획생산, 로컬푸드 유통, 공공급식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,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운영 필요

(2)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조직화 사업을 지속하고,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-유통-공공급식 연계 기능 강화 필요

(3) 중소·고령농 등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 운영 필요

(4) 농산물 안전성·품질관리와 학교·공공급식 공급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 신뢰 확보 필요

라.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

(1) 2021. 10. 05. : 재단법인 출범 및 업무 개시

(2) 2023. 04. 20. :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 개장·운영

(3) 2024. 06. 17. : 로컬푸드 직매장 선산휴게소점 개장·운영

(4) 2025. 07. 04. :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00억원 달성

(5) 2026. 06. 25. :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 입주 및 설비 가동

(6) 2026. 07. ~ : 지역우수 식재료 학교 공급 시범운영

(7) 2026. 08. 11. :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200억원 달성

(8) 2027. 03. ~ : 초중고 무상급식 현물지원 사업

마. 재단법인 예산 내역

(1) 2027년 재단 예산(안) 개요

구 분	금 액(천원)	비 고
총예산	3,550,000	
시 출연예정액(안)	2,700,000	
판매수익	850,000	

(2) 2027년도 재단 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7년	2026년	증감액	비 고
총예산	3,550,000	2,894,306	655,694	
출연금	2,700,000	1,975,000	725,000	
판매수익	850,000	694,080	155,920	
기타수익	-	6,852	△6,852	
이월금	-	218,374	△218,374	
인건비	1,302,410	1,087,675	214,735	
운영비 소계	1,003,704	798,024	205,680	
일반운영비	277,580	336,139	△58,559	
여비	35,700	49,000	△13,300	
업무추진비	6,000	6,000	-	
직무수행경비	42,480	36,360	6,120	
연구개발비	52,000	69,000	△17,000	
수선유지교체비	68,900	36,395	32,505	
관서업무비	6,760	6,760	-	
위탁관리비	121,710	42,860	78,850	
연금부담금 등	112,403	105,990	6,413	
자산취득비	12,900	6,250	6,650	
예비비	267,271	103,270	164,001	신규채용 인건비
사업비 소계	1,243,886	1,008,607	235,279	
로컬푸드 직매장 운영	303,666	350,536	△46,870	
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확립	88,180	89,640	△1,460	
농·축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	220,780	208,545	12,235	
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 운영	631,260	359,886	271,374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3)「민법」 제32조

(4)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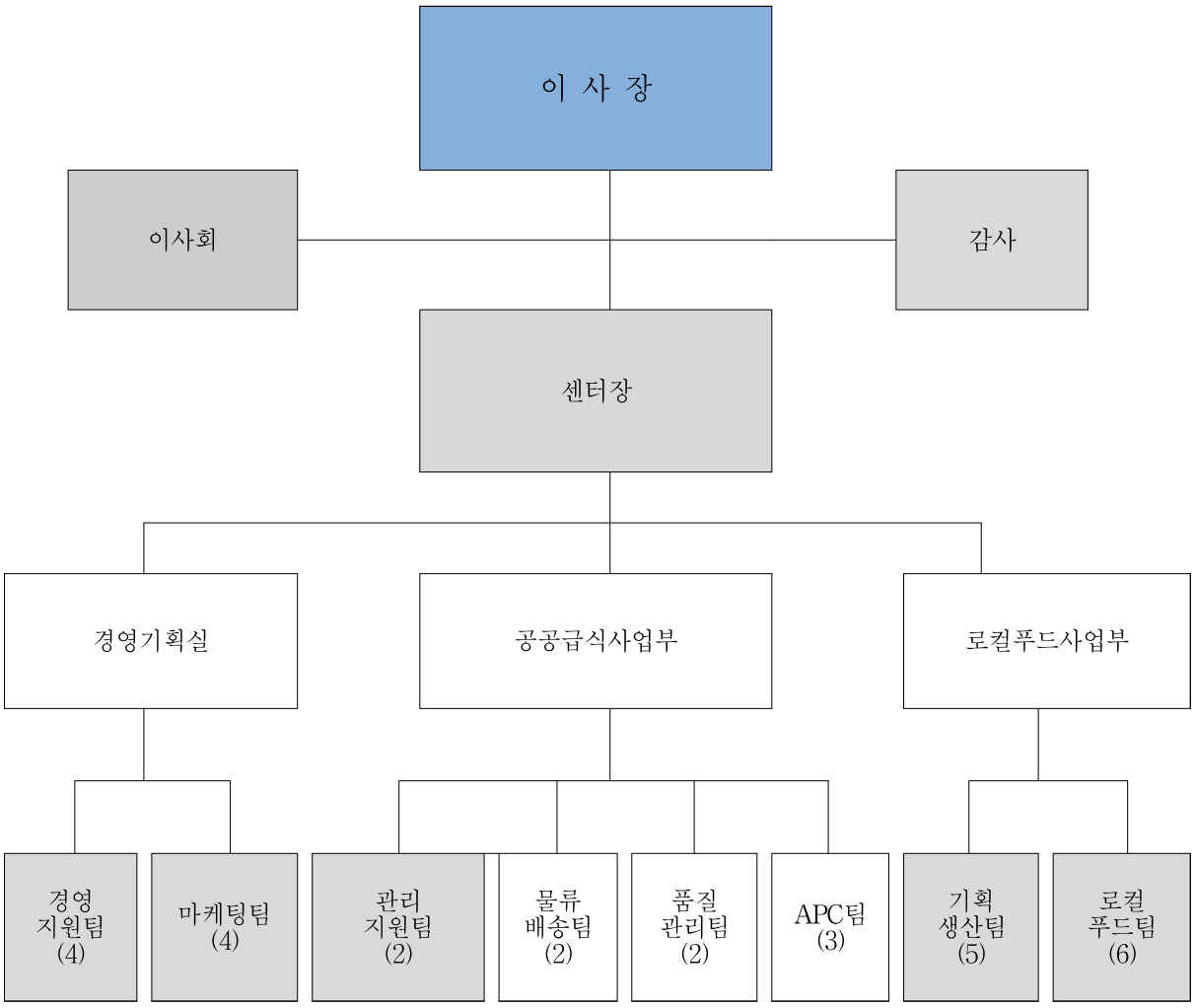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　　의 : 예산재정과

라. 기　　타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구표 및 업무분장(붙임)

[붙임]

〈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구표〉



구 분	총 계	센터장	직 원					기타
			소계	1실 2부장	팀 장	대 리	사 원	
정 원	32	1	31	3	8	10	10	
현 원	17	1	16	-	2	6	8	10 (기간제)

※ 직위 및 직급 : 센터장(5급), 실장 및 부장(6급), 팀장(7급), 팀원(8~9급)
※ 현원 17명은 정규직, 기간제근로자 10명은 별도임

〈업무 분장〉

구 분	분 장 사 무
이사장	- 재단법인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
센터장(1)	-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부문 실무총괄
경영기획실장 (1)	- 센터 운영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- 현안 조사, 분석, 대책 수립 - 센터 실무 및 시설관리 총괄
경영지원팀 (4)	- 센터 운영 및 자산관리 -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관리 - 재단사업 지출·계약 등 회계업무 - 예산, 규정, 인사관리, 행정 사무 등
마케팅팀 (4)	- 소비자 조직화 및 동향파악, 만족도 조사 - 식품기업 농산물 원재료 공급업체 발굴 및 협약 - 국내외 판로확보(유통거래처 발굴) 및 유통채널 다각화 - 농산물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추진
공공급식사업부장 (1)	- 급식사업부 사업관리 - 관리지원, 물류배송, 품질관리 실무 관리
관리지원팀 (2)	- 공공기관, 복지시설 등 식재료 수주·발주 관리 - 공공영역 홍보 및 기타 공공영역사업 발굴 - 수발주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 및 정산 - 클레임 접수 - 급식센터 시설 인허가 및 인증 등 관리 - 출하용 바코드 인쇄 및 수정발주 관리
물류배송팀 (2)	- 원물 발주 및 수집관리 - 클레임 배송 및 관리 - 통합물류 및 배송인력 관리 - 식재료 배송 및 순회수집 - 식재료 단가조사
품질관리팀 (2)	- 식재료 품질 검수 및 입고처리, 저온창고 관리 - 식재료 품질기준 표준화 - 농산물 소분·소포장
APC팀 (3)	- 주요 농산물 수매사업 - 저장량 및 출하량 관리 - 저온창고 위생 등 시설 관리
로컬푸드사업부장 (1)	- 상품화 과정 사업관리 - 전처리가공, 로컬푸드사업 실무 관리
기획생산팀 (5)	-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- 생산 및 작부 관리 - 안전성 관리
로컬푸드팀 (6)	-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-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
기 타	- 신규업무는 센터장이 연관 주무부서로 사무분장 수행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~③ 생략

□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
(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2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준하여 산정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7년)	2차년도 (2028년)	3차년도 (2029년)	4차년도 (2030년)	5차년도 (2031년)	합계
세출	2,700	2,850	3,000	3,150	3,211	14,911
□ 총 비용	2,700	2,850	3,000	3,150	3,211	14,911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7년)	2차년도 (2028년)	3차년도 (2029년)	4차년도 (2030년)	5차년도 (2031년)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2,700	2,850	3,000	3,150	3,211	14,911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2,700	2,850	3,000	3,150	3,211	14,911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재단 인력 증가 및 운영비 상승, 직매장 수익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 성 자 : 농식품산업과 먹거리정책팀 정미애(☎480-5923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시 출연금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2,700	
인 건 비	1,302	O 보수(5급) - 86,520,000원 × 1년(1명) = 86,520,000원 O 보수(7~9급) - 509,924,000원 × 1년(16명) = 509,924,000원 O 제수당(정규직) - 198,499,000원 × 1년(17명) = 198,499,000원 O 기간제근로자 급여 - 302,971,000원 × 1년(10명) = 302,971,000원 O 퇴직급여 충당 및 사용자부담금(정규직, 기간제) - 127,588,000원 × 1년(27명) = 127,588,000원 O 평가급(17명) - 76,908,000원 × 1회 = 76,908,000원
운 영 비	779	O 관리운영비(제세공과금, 소모품비, 수선유지비 등) - 779,000,000원 × 1식 = 779,000,000원
사 업 비	619	O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운영 : 70,500,000원 - 판매촉진, 건물유지관리, 재료 및 소모품비 등 O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확립 : 61,950,000원 - 출하자교육, 안전성검사, 농장체험 등 O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 : 68,000,000원 - 수출역량강화,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, 특판 행사 등 O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(APC) 운영 : 418,626,000원 - 급식사업, 수매사업 등

소 관 부 서		농식품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신 미 정
	팀 장	이 효 중
	담 당 자	정 미 애 (480-5923)